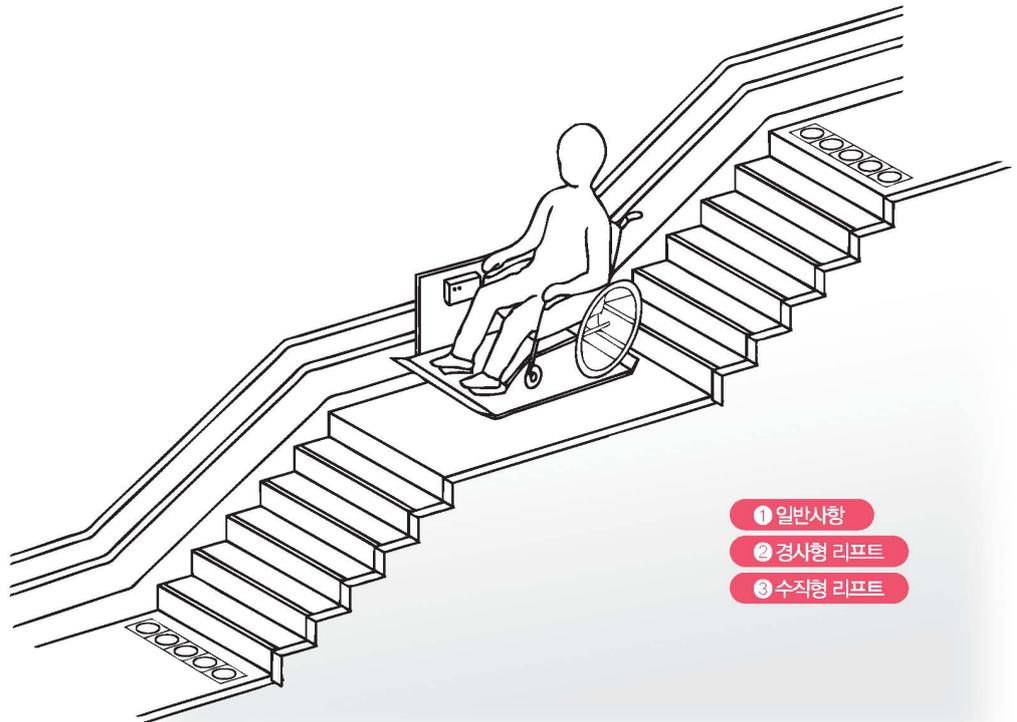


# 10. 휠체어 리프트



■설치원칙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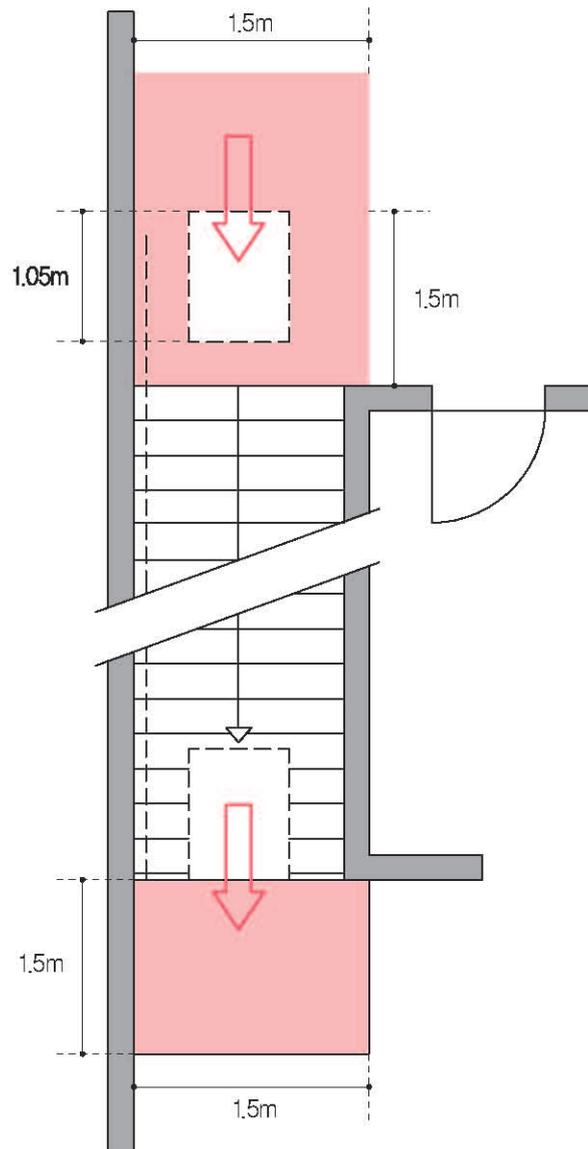
보행장애인 중 특히 휠체어 사용자에게 수직 이동은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. 승강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낮은 층고의 건물 또는 개조가 불가능한 공간에서의 수직 이동은 휠체어 리프트로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.

■설치요점

- 휠체어 리프트는 계단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들이 짧은 거리의 수직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승강장치이다.
- 설치장소에 따라 적정성 유무를 확인한 후 설치할 필요가 있다.
- 계단의 폭이 넓고 충분하여 휠체어 리프트와 다른 보행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안전레일 또는 격리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반드시 접어 보관치 않아도 된다. 이때 위·아래 출입구에는 보행자가 리프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문과 안쪽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최대높이 1.8m 이내에 설치·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## 1) 일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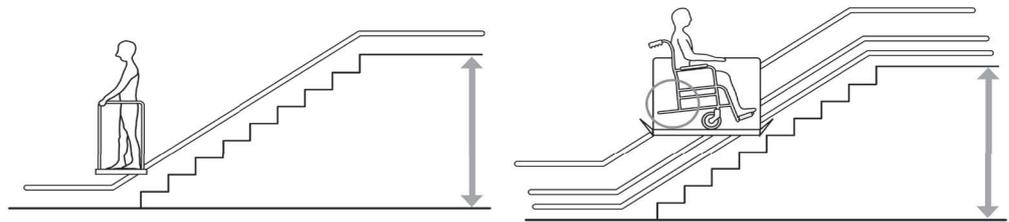
-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1.5m×1.5m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.
- 승강장에는 휠체어 리프트 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,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.
- 운행 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 시킬 수 있고,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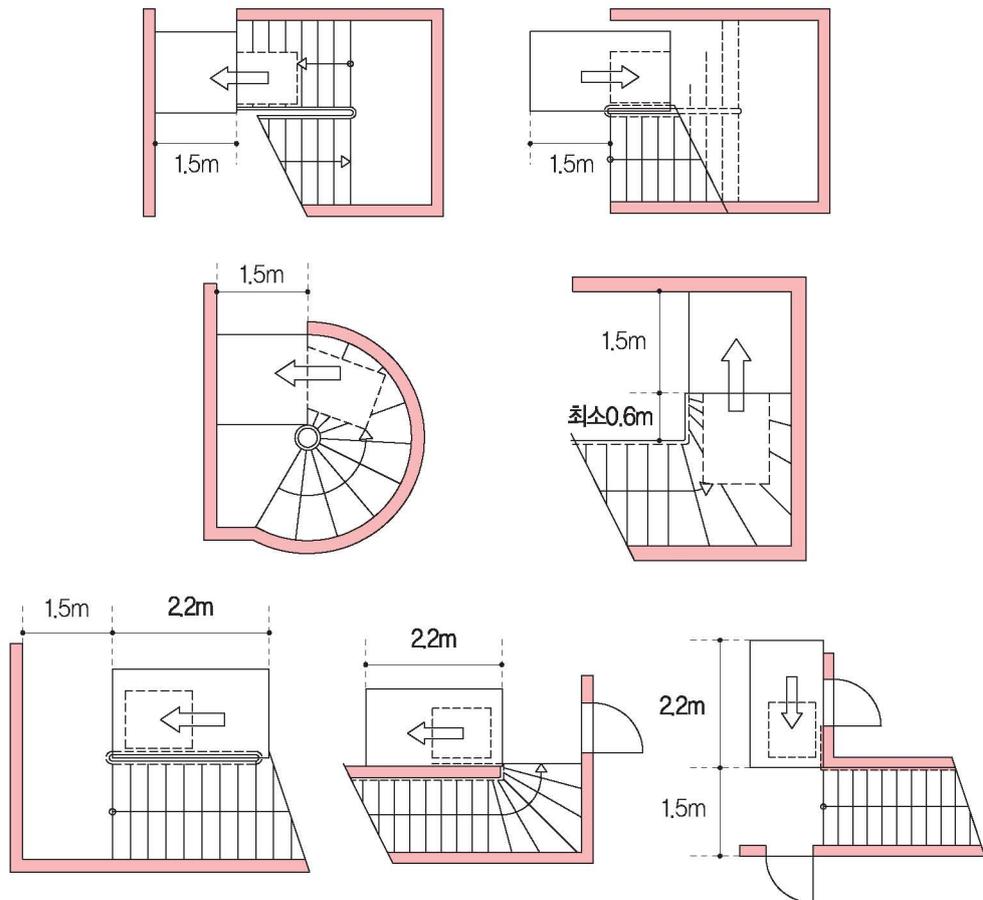
〈휠체어 리프트의 활동공간〉

2) 경사형 리프트

-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는 휠체어 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.8m 이상, 길이 1.05m로 하여야 하며, 휠체어 사용자가 탑승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.
- 운행 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,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-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, 벽면으로부터 6cm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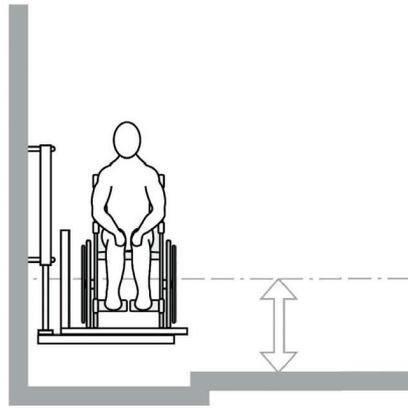
〈경사식 휠체어 리프트의 다양한 형식〉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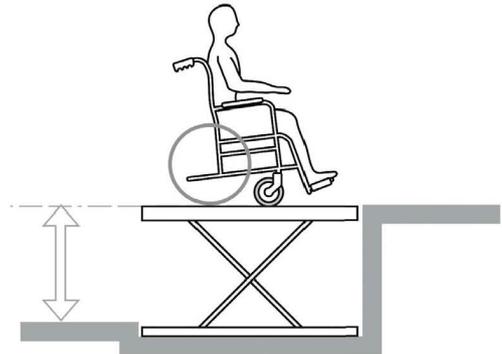
〈계단 유형별 경사식 휠체어 리프트 설치방법〉

3) 수직형 리프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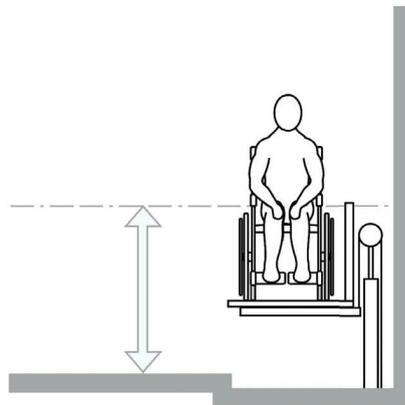
-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.9m 이상, 깊이 1.2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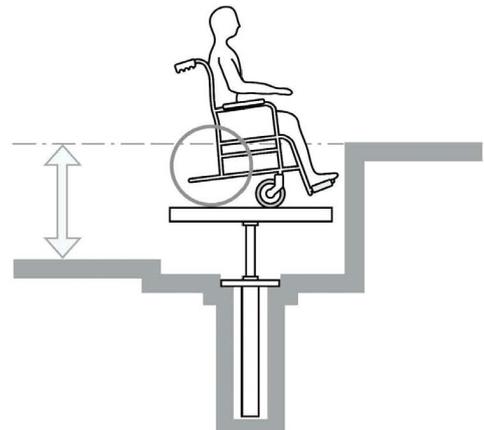
〈수평 스크루식 리프트〉



〈수직 스크루식 리프트〉



〈체인식 리프트〉



〈유압식 리프트〉